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4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최수진・김성원・박준태

김예지 · 최형두 · 조정훈

서지영・인요한・김 건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준대규모점포 (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최근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은 인접 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 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안 제 8조제6항 후단 신설).
- 다. 시장·군수 등은 개선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이에 따르지 아 니할때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제3항 신설).
- 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의7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라 한다)는"으로, "한다"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로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 여야 한다.

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매년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의2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
- 2. 제12조의2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권고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이하 이 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 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려는 자"라 한다)는-----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 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대 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 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 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 (생략)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저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저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 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 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 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이 경우 개설등록</u>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특별자치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시
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 결	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현	<u> </u>
⑦ (현행과 같음)	
세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1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
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대통	-렁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표할
<u>수 있다.</u>	
네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인정하는 경우 <u>대형마트(대규</u> 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 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 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
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
형마트는 통신판매를 할 수 있
<u>다.</u>
112조의7(규제의 재검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매년(매년 기준일
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
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

2. 제12조의2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